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숙애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3. 제안사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문구를 정비함

4. 주요내용

- 각종 수수료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 규정 정비(안 제3조)
-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 납입 규정 보완(안 제20조)
=> 정산일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안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 방법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수입증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

〈종이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의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종이수입증지	- 다량구매 보관 용이	- 제조비용 증가, 위·변조 - 재사용 등 부조리 상존 - 고액수수료 민원사무 다량의 종이 증지 첨부 - 소인날인 수작업 처리 - 구매 접근성 저하 등
전자수입증지 (인증기, 카드, 인터넷 등)	- 무방문 납부 가능 - 소인 날인 불필요 - 신용카드, 인터넷 등 납부방법 다양 -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민원신청 가능 - 정산관리 용이 등	- 필요시마다 구매

-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문구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에서는, 사용된 약칭표기인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 를 제2조로 옮김. 이는 목적 규정에는 약칭 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안 제3조에서는, 각종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행 증지 및 현금납부에서 증지, 현금, 신용·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다양화한 것임.

-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²⁾ 및 「전자정부법」 제14조³⁾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 전산민원접수대장 등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지방세, 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을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표로 그동안 위·변조가 용이하며 재사용 문제 등 공무원의 부패 발생뿐만 아니라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 등으로 행정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구매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해 왔음.
- 이에 행정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은 타당함.

- 안 제4의2제1, 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서는, “제0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표현된 문구를 “제0조에 따라” 로 개정함.
 - 이는 “제0조에” “규정”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규정” 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6조에서는, 증지 인수 시 입회자 중 분임경리관을 삭제하고, 사용된 용어 중 “입회” 를 “참석” 으로 변경함.
 - 분임경리관(명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임재무관으로 변경)은,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으로 증지 인수 입회는 담당부서인 분임징수관⁴⁾의 참석만으로도 문제가 없음.
 - 또한 용어의 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6조제4항, 제19조, 제20조, 제29조에서는 사용된 용어 중 “금고” 를 “도금고” 로 변경함.
 - 현행 조례에서는 금고와 도금고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민원인의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분임징수관: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관·과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안 제6조제2항에서 “충청북도금고”를 “충청북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로 약어표기를 명시하고, 이하 “금고”를 “도금고”로 변경하여 용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20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사용된 용어 중 “기타”를 삭제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27조제1항, 제2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개상용어인 ‘비치하여 “를 순화 용어인 ” 갖춰 놓고 “로 변경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맞도록 신용·체크카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고,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내용상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